

1. 개정이유

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가산 적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(안 제5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15호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8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7호, 2025.2.1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5년 7월 1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월”을 “전월(기준월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(기준월)과 비교하여 산정한다.

제56조의2제1호 단서 중 “전월”을 “전월(기준월)”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,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,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.
4.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)

- ①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5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유효기간)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가산은 연간 6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월에 대하여 적용한다.</u> 3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,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.</u>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 부칙(제2025-115호, 2025.07.01.)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) ①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. ② 제5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유효기간)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--	---